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19. 4.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차 례

1. 지원자 유의사항	1
2. 대입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2
※ 원서접수 절차 안내	
3. 입학전형 일정	4
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5
5. 지원 자격	8
6. 제출서류	13
7. 전형방법	16
8. 전형료	17
9. 입학전형 안내	17
■ 부록	
○ 서식 1) 학력조회 자료	18
○ 서식 2) 수학기간기록표자료	19
○ 서식 3) 외국체류기간기록표	20
○ 서식 4) 입학동의서	21
○ 별표 1) 생활관 안내	22
○ 별표 2) 신입생 등록금 안내	24

1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함

- 가.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통해 공지함
- 나. 제출서류는 대리인이 제출하여도 가능하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지원할 수 있음
- 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지원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함
- 라. 시험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마. 면접고사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바.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형기간 연락처는 선발 종료시점까지 연락(전화 또는 전보)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이 책임지지 않음
- 사. 입학원서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입국수속 절차 등 **미 이행으로 본인에게 불이익(합격 취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음
- 아.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불합격 처리**함
- 자. 부정행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입학허가 후라도 학력조회 등을 통해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허가 취소)
 - ※ 부정행 방법으로 입학하였다고 판단되어 입학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차. 합격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일정과 방법에 따라 입학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카. 접수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지원 자격 미달자 및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를 반환함
- 타.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2020. 3. 27(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1 -

2 대입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 지원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함

- 가. 특별전형 대상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판단된 자는 **모집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함
-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해당**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교 및 타교의 경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다.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지원자**는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본교 내 복수지원 및 제2지원(2개 학부·학과 지원)은 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해야 함
(이 경우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함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초과 접수부터 취소하며, 우리 대학의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대학 창구에서 원서를 접수한 시간 기준임)
-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지원 및 등록 상황을 추후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2 -

※ 원서 접수 절차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19. 7. 9(화) 17:00 이후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며,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이트 접속	우리 대학교 입학과 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	
입학지원서 입력	○ 컬러사진 첨부(업로드) [면접고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 ○ 수험생 유의사항,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확인
↓	
입력사항 확인	○ 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	
전형료 결제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형료 결제 ※ 전형료 결제 완료 후(인터넷 접수가 완료)에는 내용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 결제 완료 후 지원서, 수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출력 ※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
↓	
접수 완료	
↓	
서류 제출(해당자)	○ 첨부서류 제출자는 우편발송용 표지를 출력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제 출 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적용에 따라 접수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는 반드시 접수방법을 확인하여 접수하기 바람

3 입학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접수 (원본제출)	2019. 7. 4(목) 09:00 ~ 7. 9(화) 17: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http://enter.jbnu.ac.kr)
서류제출	2019. 7. 9(화) 18:00까지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관리과	■ , 택배, 등기우편 [등기우편] 2019.7.9(화) 국내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직접방문, 택배] 2019.7.9(화) 18:00까지 도착분 유효 - 서류제출일시 기한 엄수 ■ 토요일요일 공휴일 서류접수 받지 않음
서류심사 결과통보	2019. 8. 9(금) 14:00 예정	본교 '입학정보'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홈페이지 공지
면접고사	2019. 8. 22(목) 14:00예정	지원 학과사무실	
합격자 발표	2019. 9. 20(금) 14:00예정	본교 '입학정보'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추가서류제출	2020. 3. 27(금) 18:00 까지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관리과	해당자만 제출
합격자 등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12. 13(금)	본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록금 납부	추후안내	본교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고지서 인터넷 출력

※ 위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 학	계 열	모집단위(학부,학과)	모집인원		비 고
			제1유형	제2유형	
본 부	인문계	공공인재학부	모집안함	모집안함	
		1개 학부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인문계	국제인문사회학부	약간명	약간명	
	자연계	국제이공학부	약간명	약간명	
		2개 학부			
간호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1개 학과			
공과대학	자연계	건축공학과	약간명	모집안함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고분자.나노공학)	모집안함	모집안함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유기소재섬유공학)	약간명	약간명	
		기계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	모집안함	약간명	
		기계설계공학부(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모집안함	약간명	
		기계시스템공학부	모집안함	모집안함	
		도시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약간명	모집안함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소프트웨어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	모집안함	모집안함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	모집안함	모집안함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	모집안함	모집안함	
		양자시스템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약간명	약간명	
		융합기술공학부(IT융용시스템공학)	약간명	약간명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공학)	약간명	모집안함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	약간명	약간명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	약간명	약간명	
		전기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전자공학부	약간명	약간명	
		컴퓨터공학부	모집안함	모집안함	
		항공우주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화학공학부	약간명	약간명	
		IT정보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26개 학부(과,전공)			

대 학	계 열	모집단위(학부,학과)	모집인원		비 고
			제1유형	제2유형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계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약간명	약간명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	약간명	약간명	
	자연계	농생물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동물생명공학과	약간명	약간명	
		동물자원과학과	약간명	약간명	
		목재응용과학과	약간명	모집안함	
		산림환경과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생명자원융합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생물환경화학과	약간명	약간명	
		식물공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원예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작물생명과학과	약간명	모집안함	
		조경학과	약간명	약간명	
		지역건설공학과	약간명	모집안함	
		15개 학부(과)			
사범대학	인문계	교육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국어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독어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역사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영어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윤리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일반사회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지리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자연계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모집안함	모집안함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모집안함	모집안함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교육전공)	모집안함	모집안함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전공)	모집안함	모집안함	
	예체능계	수학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체육교육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14개 학부(과,전공)			
사회과학대학	인문계	사회복지학과	약간명	약간명	
		사회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신문방송학과	약간명	약간명	
		심리학과	약간명	약간명	
		정치외교학과	모집안함	약간명	
		행정학과	약간명	모집안함	
		6개 학과			
상과대학	인문계	경영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회계학과	모집안함	모집안함	
		경제학부	약간명	모집안함	
		무역학과	약간명	약간명	
		4개 학부(과)			

대 학	계 열	모집단위(학부, 학과)	모집인원		비 고
			제1유형	제2유형	

※ 모집단위별로 제1유형은 총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인 76명 이내에서, 제2유형은 모집단위별 학부(과)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모집할 계획임
 ※ 상기 모집단위 및 인원 등은 2019학년도 정원조정 관련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 자격

1. 제1유형 :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

☆ 아래 기본 학력요건, 자격요건 및 지원자 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기본 학력요건

〈 기본 학력요건 〉	
·의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나. 자격요건

분	자 격 요 건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2년 이상 교포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주재상사직원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로서 고등학교 과정(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과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로서 고등학교 과정(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재외국민 자녀	기타 특별한 사유(질차)로 부모 모두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현지자영업, 현지법인회사 근무, 해외선교활동, 해외파견교직원, 외국유학·연수(학위취득목적) 등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복수국적자 제외, 지원자의 부모 국적 불문)

다. 지원 자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분	세부인정기준(각 항목 모두 충족)
사학	① 입학허용기간 :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외국학교」 인정기준 1)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 <이테올로지>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2)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③ 「재학기간 2년 이상」 인정기준 (단, 1개 학년 2학기제 중 1개 학기 이수불 6개월 재학한 것으로 봄) 1) 고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봄 2) 학생의 재학기간과 보호자(파견당사자)의 해외근무기간은 중첩되어야 함 3) 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0년 2월말(일본은 3월말)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졸업 시점까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 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④ 재학 기간 중 실제 재류하지 않은 기간(방학 등)은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류 기간으로 인정함 ⑤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⑥ 거주(재류)기간 산정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⑦ 거주(재류)기간, 학력,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각 항목 모두 충족)
영주교포자녀	① 부모, 학생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어야 함 ②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주해야 함 (자녀의 외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과 부모 및 학생의 영주기간이 중첩되는 기간만 인정) ※ 단, 영주권 제도가 없거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 서류 발급 제출)인 경우 부, 모, 자녀와 함께 5년 이상 거주 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5년(10학기)이상 재학한 자(자녀의 외국 소재 학교 재학 기간과 부모, 학생의 거주기간이 중첩되는 기간만 인정)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① 근무자의 근무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하나, 공무원의 해외 고용휴직은 인정 ② 보호자는 파견당사자로 하고 배우자의 거주·재류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함 ③ 공무원·상사직원·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1)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상사직원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임직원의 자녀는 지원 가능 / 이 경우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정부 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 기구는 제외)

분	세부인정기준(각 항목 모두 충족)
자녀	① :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외국유학 연수자 등의 자녀 ② 재학 및 부모의 근무(거주)기간 : 근무(거주)는 상시 인정범위로 하고, 인정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재외국민자녀에 준하되, 부모 모두 해당국가에서 거주하여야 함 ③ 부모의 해외체류 : 학생이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 기간 중 해외 근무자인 부 및 모 모두가 2년 이상 해당국가에서 체류 ※ 자녀의 외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과 부모 및 학생의 영주기간이 중첩되는 기간만 인정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복수국적자 제외, 지원자의 부모 국적 불문

라.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형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영주권)	2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영주권 없는 국가)	5년	5년	5년	-	5년	5년	5년	5년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유치과학자·교수요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	-		
기타 재외국민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년	2년	2년	-	-	-	-		

※ 학생의 재학기간과 보호자(파견당사자)의 해외근무기간은 중첩 되어야 함

※ 방학 및 해외학교, 해당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함 (단, 재학기간 동안의 해외학교 학사일정(School Calendar)을 제출하여야 함)

※ 해외거주 및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2. 제2유형 :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구 분	자 격 요 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에도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 <table><tr><th>학년제</th><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th>비고</th></tr><tr><td>10학년 이하</td><td>미인정</td><td>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 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 수로 인정</td></tr><tr><td>11학년제</td><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 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td><td></td></tr><tr><td>12학년제</td><td>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 로 인정</td><td></td></tr><tr><td>13학년 이상</td><td></td><td></td></tr></table> * 학교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 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입학허용기간 :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는 불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 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 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 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 로 인정		13학년 이상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 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 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 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 로 인정														
13학년 이상																

6 제 출 서 류

가.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 (서식참고)
2	수학기록표	
3	학력조회자료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북한이탈주민 제외)
6	외국학교 재학사실증명서	재학학교 발행(재학기간, 연·월·일 정확히 기재) ※ 북한이탈주민 제외

나.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영주교포의 자녀	1) 부·모 외국 체류기간기록표 각 1부 2)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4)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5)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외국근무 제외국민 (공무원 자녀, 상사직원 자녀 등)	1) 보호자 외국 체류기간기록표 각 1부 ※ 보호자는 외국에서 근무 거주하는 지원자의 부 또는 모 2) 보호자 재직 증명서 (국내 본사 발행, 해외근무 경력 기재) 3)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 리서(상사직원 자녀에 한함) 1부 ※ 단,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임 직원의 경우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서(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서(해당자) 1부 5)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부 7)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각 1부 8) 여권 사본(보호자·학생) 각 1부

- 13 -

구 분	제출서류
기타제외국민 (현지 법인근무자 자녀, 현지 자영업자 자녀 등)	1) 부·모 외국 체류기간기록표 1부 2) 현지법인 등록증 사본(외국정부기관발행) : 해외법인근무자 자녀에 한함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지 자영업자 자녀에 한함) 4) 세금납입증명서 :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현지 자영업자 자녀에 한함) 5)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 (선교사 자녀에 한함) 6) 해당 기관장 초청서 또는 추천서 (해외파견교직원 자녀에 한함) 7) 보호자 여권상의 유학비자 사본, 보호자 재학사실 증명서(재학기간 및 이수과정 명기) 각 1부(해외 유학 및 연수자 자녀에 한함) 8) 보호자 재직 증명서 (국내 본사 발행, 해외근무경력 기재, 파견지역 명시) 1부 9) 보호자의 실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서(보호자), 월급명세 등 ※ 단,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임 직원의 경우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서(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0)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1부 1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기준) 1부 1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13)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1) 외국국적증명서(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2)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3)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4) 국적 상실 확인 증명서(학생 : 기본증명서 1부) 5)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이상 예금잔고증명서 6)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14 -

분	제출서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1)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2) 여권 사본(부·모·학생) 각 1부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시, 군, 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2) 학력증명서 1부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1)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원본 또는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한국어연수 4급 이상 수료증 원본

<유의사항>

-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여야 하고, 일부서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합격자는 추가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 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외국소재학교에서 발급 받은 제출서류 중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안내

- 가. 제출대상 : 합격한 자에 한해 제출. 원서접수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재출한 자는 제출이 불필요함.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재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나. 제출서류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다. 제출방법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15 -

- 라. 제출기한 : 2020. 3. 27(금) 18:00까지
- 마. 제출처 : 우)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
-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문의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500)

7 전 형 방 법

가. 시험과목 및 배점

지원유형	자 격 구 분	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반영방법
제1유형	- 영주교포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기타재외국민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복수국적제외)	전 모집단위	면접고사(100%) : 100점
제2유형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 주민 - 결혼이주민		

나. 선발방법

- 제 1:2유형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지망자 중에서 면접고사에 응시한 자 중 총점(100점 만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 면접고사 결과 면접위원 3인중 2인 이상이 면접고사 만점의 40% 미만으로 평가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전 형 료

가. 전형료 : 60,000원

구분	일반 전형료	면접 고사료	계
전 유형	30,000원	30,000원	60,000원

나. 전형료 반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관련)

1) 반환대상 및 금액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 ④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 ⑤ 지원자격 미달 및 서류 미제출자 전원: 30,000원
- ⑥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 : 2020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시 이용비용은 차감하고 반환하며,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2) 반환방법(택 1)

- ① 입학원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이체
 - ※ 본인 및 보호자 이외의 환불계좌 입력으로 인한 입금 사고는 지원자 책임임
- ②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

9 입학전형 안내

-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
- ▶ 기타 문의사항 : 전북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관리과 재외국민 입시담당자
- ▶ 주 소 : 우)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
- ▶ 연락처 : (063) 270 - 2500, 전송(FAX) (063) 270 - 4745
- E-mail : cbnuadmission@jbnu.ac.kr

- 17 -

서식 1)

학 력 조 회 자 료

성 명	접 수 번 호				
지 원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과 정 표기	학 교 명	재학 기간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초등 학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중 학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고등 학교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 외국소재 학교 교무담당자 E-mail 주소는 필수적으로 기입

- 18 -

서식 2)

수험번호 :	모집단위 :	성명 :
--------	--------	------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년 모든 학교를 기재)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1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학생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으며 본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귀교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2019. .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서식 3)

부, 모(또는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기록표

수험번호 :	모집단위 :	성명 :
--------	--------	------

- ▶ 자녀는 부, 모의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 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는 보호자만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보호자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 종료시는 ▲ 표시																	
	기 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교포 기재란(부)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교포 기재란(모)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별 표 1)

생활관 안내

전북대학교 생활관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전주캠퍼스 생활관 ☎ 063-270-3630(평화-대동-새빛관), 4723(참빛관), 3530(해인관)
- 특성화캠퍼스(익산) 생활관 ☎ 063-850-0623
- 선발기간에는 전화가 복잡하므로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생활관 입주신청기간에 온라인 접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순으로 선발(대학입학원서에 기재된 주소)

■ 건물현황 및 생활 인원

호관별	구분	건물명	수용인원	생활관비(학기당)	비 고
전 주 캠퍼스	직 영 생활관	평화관	450명	1,010,890원(주중 5일 의무식)	■ 호실비품 :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에어컨 ■ 편의시설 - 독서실, pc실, 세미나실, 편의점, 분석점, 커피숍 등 -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 위생시설(화장실, 세면장) - 평화관, 대동관 : 공용 - BTL 및 특성화캠퍼스 : 개별호실 내 설치 ■ 신입생 선발비용 : 모집인원의 약 55% ■ 선발기준 : 원거리 선발
		대동관	325명	403,390원(미식사)	
	B T L 생활관	참빛관	1,812명	1,010,250원(주말식사 제외)	
		해인관	503명	481,500원(식비 제외)	
		새빛관	963명	1,099,700원(주중 5일 의무식)	
				492,200원(미식사)	
특성화 캠퍼스 (익산)	직 영 생활관			1,193,360원(주중 5일 의무식)	
		한빛관	600명	585,860원(미식사)	
				1,093,850원(주중 5일 의무식)	
				486,350원(미식사)	
				516,810원(식비 제외)	
				403,390원(식비 제외)	
합 계			5,045명	<참고사항> 참빛관 : 의무식 평화관-대동관-새빛관-한빛관 : 선택식 ※ 한빛관 공공요금 부담금 160,000원 포함된 금액임. 식사는 월-금요일까지 1일 3식 의무식(주중 공휴일 포함) ※ 단, 토·일요일은 참빛관 식당에서 식권 개별구매 후 이용 (대상 : 평화관-대동관-새빛관-한빛관-참빛관 의무식 신청자) 해인관은 식당 없음.	

※ 생활관비는 2019학년도 1학기 기준금액으로 2020학년도 생활관비는 학사일정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신청

- 온라인 접수 : 생활관 홈페이지(신입생)에서 접수
 - ⇒ 신청기간 및 합격자 발표 : 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http://likehome.jbnu.ac.kr>)
 - ※ 기간이 도래하면 홈페이지에 팝업 게재 예정임
 - ⇒ 신청기간에 신청한 인원 중 생활관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정

- 21 -

별표 2~3)

신입생 등록금안내

2019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다음과 같으며, 2020학년도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계열, 학과)	등록금	대학(계열, 학과)	등록금	대학(계열, 학과)	등록금		
공공인재, 국제인문 사회학부 국제이공 학부	인문계열	1,661,000	인문계열	1,661,000	예술대학	2,366,000	
	자연계열	2,298,000	사범 대학 과학체육교육과	2,134,000		인문대학	1,661,000
	간호대학	2,134,000	수학교육과	1,670,000			자연과학 대학
공과대학	자연계열	2,298,000	사회과학대학	1,661,000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1,670,000
		1,661,000	상과대학	1,661,000		자연계열	2,134,000
농업생명 과학대학	자연계열	2,134,000	생활과학대학	2,134,000	환경생명 자원대학	자연계열	2,134,000
			아동학과	1,661,000		생명자원 융통경제	1,661,000
의예과, 치의예과	3,164,00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134,000			

학사제도 안내전화

담당 업무	안내 부서	전화 번호(지역번호 : 063)	비 고
입학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입학전형실	270-2500	전주캠퍼스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학 생 과	270-4089	전주캠퍼스
등록(예치)금 납부, 환불	재 무 과	270-2055, 4371	전주캠퍼스
전학(과), 휴학 등 학적	학사관리과	270-2092, 2093	전주캠퍼스
복수전공, 부전공	교 무 과	270-2084	전주캠퍼스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 취득	교 무 과	270-2084	전주캠퍼스
수강신청 관리	학사관리과	270-2102 ~ 2104	전주캠퍼스
글로벌인재 양성 프로그램	국제협력부	270-2098	전주캠퍼스
취업안내	취업지원과	270-4142	전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270-2661	전주캠퍼스
단과대학 행정실	공공인재학부	270-4704	전주캠퍼스
	국제인문사회학부	270-4688	전주캠퍼스
	국제이공학부	219-5587	전주캠퍼스
	간 호 대 학	270-4484	전주캠퍼스
	공 과 대 학	270-4385	전주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270-2486	전주캠퍼스
	사 범 대 학	270-2697	전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270-2906	전주캠퍼스
	상 과 대 학	270-2976	전주캠퍼스
	생활과학대학	270-3826	전주캠퍼스
	수 의		

전북대학교 오시는 길



■ 전주캠퍼스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특성화캠퍼스 : 54596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소재